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페이지
1.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1
2. 2024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4-65
----------	-------

2024. 6. 13.
전문위원 신준호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4. 5. 24.
- 다. 회 부 일 : 2024. 5. 28.

2. 결산현황

가. 세입결산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3만 1,89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음.

(단위 : 원)

과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현액 대비	징수 대비
합 계	-	-	331,890	331,890	-	-	100.0%
세외수입	-	-	331,890	331,890	-	-	100.0%
임시적세외수입	-	-	331,890	331,890	-	-	100.0%

- 임시적 세외수입(기타수입)의 실제수납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주요수당 지급 자체점검 결과 기술정보수당 반납 : 52,900원
 - 기간제 속기사 보험료 환급금 : 109,690원
 - 의전차량 자동차세(지방세) 신고분 환급금(2022년 1월분) : 3,920원
 - 의정활동 촬영장비 구매 관련 캐시백 환급액 : 150,000원
 - 의원연구실 냉장고 구매에 발생한 네이버 적립포인트 : 15,380원

나. 세출결산

(단위 : 원)

과목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4,033,439,000	4,033,439,000	3,464,764,115	0	568,674,885
선진의회상 정립	1,941,252,000	1,941,252,000	1,697,416,540	0	243,835,460
의정활동 지원	1,823,946,000	1,818,846,000	1,577,771,360	0	241,074,640
의정활동 홍보	117,306,000	122,406,000	119,645,180	0	2,760,820
행정운영경비	2,092,187,000	2,092,187,000	1,767,347,575	0	324,839,425
인력 운영비	1,921,288,000	1,921,288,000	1,645,275,290	0	276,012,710
기본경비	170,899,000	170,899,000	122,072,285	0	48,826,715

- 202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0억3,34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과 동일함.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85.9%인 34억6,476만4,115원이 지출되었고, 5억6,867만4,885원(14.1%)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정활동 지원’ 은 예산현액 18억1,884만6,000원 중 15억7,777만 1,360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 홍보’ 는 예산현액 1억2,240만6천원 중 1억1,964만5,180원을 집행했음.
 -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는 예산현액 20억9,218만7,000원 중 17억6,734만7,575원을 집행했음.
- 집행잔액 구분
 - 의정활동 지원: 2억4,107만4,640원(불용률 13.25%)
 - 의정활동 홍보: 276만820원(불용률 2.26%)

- 인력운영비: 2억7,601만2,710원(불용률 15.53%)
- 기본경비: 4,882만6,715원(불용률 28.57%)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단위 : 원)

과목	집행잔액				
	계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568,674,885	10,871,000	-	557,803,885	-
선진의회상 정립	243,835,460	10,686,000	-	233,149,460	-
의정활동 지원	241,074,640	10,686,000	-	230,388,640	-
의정활동 홍보	2,760,820	-	-	2,760,820	-
행정운영경비	324,839,425	185,000	-	324,654,425	-
인력운영비	276,012,710	-	-	276,012,710	-
기본경비	48,826,715	185,000	-	48,641,715	-

-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총 세출예산 집행잔액 5억6,867만 4,885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으로 1,087만1,000원, 지출잔액으로 5억 5,780만3,885원이 발생하였음.

라. 연도별 예산 집행액 및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3	4,033,439	3,464,764	568,675	14.1%
2022	4,186,280	3,108,473	1,077,807	25.75%
2021	4,607,348	3,886,253	721,095	15.65%
2020	3,868,848	3,487,930	380,918	9.85%
2019	3,950,236	3,553,528	390,724	9.89%

- 2023년 예산액은 2022년도 대비 △1억5,284만1천원 감소되었으며, 2022년 결산 대비 불용액은 △5억913만2천원 감소함.

다. 과다불용액(집행잔액) 발생 현황

(단위 : 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구의회사무국	4,033,439,000	3,464,764,115	568,674,885	14.1%
선진의회상 정립	1,941,252,000	1,697,416,540	243,835,460	12.56%
의정활동 지원	1,818,846,000	1,577,771,360	241,074,640	13.25%
의정공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737,191,000	1,547,643,920	189,547,080	10.9%
일반운영비	118,264,000	103,627,106	14,636,894	12.4%
공공운영비	27,954,000	20,499,986	7,454,014	26.7%
행사운영비	3,400,000	838,500	2,561,500	75.3%
여비	41,880,000	16,785,430	25,094,570	59.9%
국내여비	6,880,000	2,071,700	4,808,300	69.9%
국제화여비	35,000,000	14,713,730	20,286,270	57.9%
업무추진비	50,494,000	39,489,700	11,004,300	21.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94,000	39,489,700	11,004,300	21.8%
의회비	1,272,137,000	1,199,904,524	72,232,476	5.7%
의원국내여비	11,555,000	1,986,550	9,568,450	82.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30,400,000	8,000,000	22,400,000	73.7%
의원정책개발비	95,000,000	64,000,000	31,000,000	32.6%
일반보전금	300,000	0	300,000	100%
행사실비지원금	300,000	0	300,000	100%
포상금	10,000,000	1,735,200	8,264,800	82.6%
포상금	10,000,000	1,735,200	8,264,800	82.6%
연금부담금등	39,600,000	0	39,600,000	100%
의원상해부담금	39,600,000	0	39,600,000	100%
국외 선진연수	81,655,000	30,127,440	51,527,560	63.1%
일반운영비	980,000	420,000	560,000	57.1%
사무관리비	980,000	420,000	560,000	57.1%
의회비	80,675,000	29,707,440	50,967,560	63.18%
의원국외여비	80,675,000	29,707,440	50,967,560	63.18%
행정운영경비	2,092,187,000	1,767,347,575	324,839,425	15.53%
인력운영비	1,921,288,000	1,645,275,290	276,012,710	14.4%
인건비	1,789,785,000	1,518,944,870	270,840,130	15.1%
보수	1,260,278,000	1,048,773,450	211,504,550	16.8%
기타직보수	529,507,000	470,171,420	59,335,580	11.2%
포상금	72,576,000	67,404,100	5,171,900	7.1%
성과상여금	72,576,000	67,404,100	5,171,900	7.1%
기본경비	170,899,000	122,072,285	48,826,715	28.57%
일반운영비	111,638,000	94,435,485	17,202,515	15.41%
사무관리비	102,373,000	87,898,020	14,474,980	14.14%
공공운영비	9,265,000	6,537,465	2,727,535	29.44%
여비	36,540,000	10,977,700	25,562,300	69.96%
국내여비	36,540,000	10,977,700	25,562,300	69.96%
업무추진비	14,921,000	13,137,860	1,783,140	11.95%
정원가산업추진비	2,640,000	1,020,000	1,620,000	61.36%
직무수행경비	7,800,000	3,521,240	4,278,760	54.85%
직책급업무수행경비	7,800,000	3,521,240	4,278,760	54.85%

바.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 예산 이용·이체: 해당 없음
- 예산 전용: 총 2건, 5,249,000원
 -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 공사추가분 (510만원)
 - 12월분 직급보조비 부족분 (14만9천원)

(단위 : 원)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전용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행사실비지원금	5,400,000	5,100,000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시설비	-	-	5,100,000
	기타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72,725,000	149,000	-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	-	-	149,000

- 예산 변경: 총 3건, 6,070,000원
 -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위탁교육비 부족분 (200만원)
 - 2022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분 납부 (17만원)
 -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 공사 추가분 (390만원)

(단위 : 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구분	부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변경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행사운영비	5,400,000	2,000,000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사무관리비	84,910,000	-	2,000,000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19,074,000	170,000	-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24,215,000	-	170,000
	입법 및 선거관리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자산및물품취득비	39,900,000	3,900,000	-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	시설비	5,100,000	-	3,900,000

사. 다음연도 이월액 : 해당 없음.

아. 기금 결산 : 해당 없음.

3.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및 같은법 시행령¹⁾ 등에 따라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및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승인받고자 제출된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개선 및 건의(권고) 사항 중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 검사 의견은 없음.

<표 1. 결산 검사위원 명단>

검사기간	결산검사위원						
	대표 위원	구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2024. 4. 15.~ 5. 13.	강동오	남해석	주상민	김수현	박경준	배근영	이준호

- 2023회계연도 결산 중 의회사무국 세입결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부내역은 주요수당 지급실태 자체점검 결과 수당의 병급 지급에 따른 반납, 보험료 및 세금의 환급, 물품구입에 따른 포인트로 발생하였음.
-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수당 및 급여 등의 과오지급으로 인한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업무 추진에 주의가 요구되고, 물품구입 등의 포인트 발생분 환급액은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
-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0억3,343만9,000원으

1)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 예산현액 대비 약 85.9%인 34억6,981만2,00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5억6,867만4,885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전년도 불용률 25.75%와 비교하면 불용률이 소폭 감소함. (25.75% → 14.1%)

- 최근 5년간 세출 결산액 추이는 연도별 예산집행액 표와 같으며, 예산집행 결과 불용률(14.1%)은 전년대비 11.65% 감소하였음. 다만, 마포구(일반회계) 평균 불용률(5.36%)²⁾과 비교하면 의회사무국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50% 이상인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행사실비지원금, 의원상해부담금 등의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동안 국내외적인 여건과 정서적인 차원에서 해당 사업들의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으나, 반복적인 집행 부진은 사업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유념하고 예산편성과과정에서 면밀한 사업계획과 집행가능성을 분석해야 하겠음.
- 아울러,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 등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2023 회계연도 마포구 결산서

- 의회비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23년 예산현액 총 13억5,281만2,000원 중 12억2,961만1,964원을 집행(집행률 90.89%)하였음.
- 의원국외여비 및 국내여비는 의정연수 추진 불가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업에 비해 예산 편성금액 대비 각 63.18%와 82.8%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내·외 연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매년 반복적 사업에 대한 물가상승을 고려한 교통비(항공, 열차)와 참여인원 등에 대한 과학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단순 선진지 방문보다는 연중 과학, 인문, 사회분야 박람회와 각종 포럼등의 개최계획을 파악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연수 기획의 변경이 필요해 보임.
- 아울러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액조정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확보 차원의 행정 노력도 필요함.
-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위탁과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24.41%임.
- 이는 그동안 의원역량개발이 민간위탁에 치중되어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해마다 높게 나타나던 불용률을 다소 개선하였으나, 구의회 평균불용률 대비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음.

<표 2.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자체교육) 연도별 불용률>

연 도	2023	2022	2021	2020	2019
불용률	24.41%	77.84%	65.43%	88.51%	88.34%

- 향후에도 국회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의 공공기관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 편성 등 의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집행률을 높여야 하겠음.
- 또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의 불용률은 예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도 구청에서 하반기 의회 파견 직원들의 일방적 복귀 명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로 발생한 것임. (2022년 불용률 2.96%, 2023년 불용률 73.68%)
- 포상금 예산은 직무유공 공무원 표창시 부상품(도서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82.6%임.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시상·포상·표창 관련 선거법 안내’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이 아닌 자에 대한 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위반된다는 의견에 따라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발생하였음.
- 이 같은 사항을 예산편성전 파악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202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 심사 의결·편성하였기에 결산의 환류 기능을 제고시켜 노력한 사항이라 판단됨.
-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당초 국회의원에게만 지원하던 사항을 2020년부터 지방의원에게도 지원하게 되면서 의회 관련 경비(의회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음.
- 마포구의회의 경우, 2020년 편성 이후 매년 100% 불용되고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처음으로 집행실적이 집계된 점은 고무적 상황임.

<표 3. 의원정책개발비 연도별 집행 현황>

연 도	2023	2022	2021	2020
예산액	95,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90,000,000원
집행액	64,000,000원	0원	0원	0원
불용률	32.6%	100%	100%	100%

- 최근 많은 지방의회에서 정책개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³⁾이 있었고, 그동안 마포구의회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 향후에도 자율적으로 연구단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선 의원이 주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연구단체 운영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나아가서 단순히 연구단체 활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정책 제안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음.
- 예산이용·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524만9천원, 2건과 예산 변경 607만원, 3건으로 소요 예산을 사용했음.
- 예산 전용과 변경은 ‘의정홍보 디지털게시판 설치 공사’ 건으로서 해당 사업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닥기초공사 및 전기 통신 선로 공사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목으로 집행하지 못한다는 사항을 예산 집행중 인지하여 이를 바로 잡고자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공사 분리발주에 따른 경비 증가로 행

3) KBS 뉴스(2023.8.18.) 안 쓰는 ‘의원 정책개발비’…집행률 30%

사실비지원금 510만원을 전용하였음. (자산및물품취득비 → 시설비)

-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 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면밀한 검토로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예산 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 편성단계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예산 전용을 한 경우 「지방재정법」⁴⁾에 따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나머지 예산 변경 2건 ‘신규직원 채용 등에 따른 위탁교육비 증당’ 및 ‘2022년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추가 정산분 납부’의 경우, 각각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이 집행부의 정원조정 동의를 늦어진 점과 재작년도 보험료 추가 정산분 발생이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불가피성은 인정된다고 사료됨.
- 다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하여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고,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 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예산 변경은 가급적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경을 적극 활용 해야 할 것임.
- 사업수행 환경 및 상황에 따라 기민하고 탄력적인 예산집행의 노력도

4)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

필요하지만, 안정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므로 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더불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조직권이 여전히 단체장에게 부여된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등과 관련해 구의회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과 원활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 사항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에게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감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24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77
----------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의회사무국)
- 나. 제 출 일 : 2024. 5. 24.
- 다. 회 부 일 : 2024. 5. 28.

2.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가. 세 입

- 해당 없음.

나. 세 출

-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1,986만5천원 증가한 46억1,921만5천원임.

(단위:천원)

분야·부문·정책사업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4,619,215	4,499,350	119,865	2.66%
정책사업	1,944,955	1,825,090	119,865	6.56%
재무활동	538,521	538,521	0	0.00%
행정운영경비	2,135,739	2,135,739	0	0.00%

다. 추가경정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단위사업(회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119,865	0	119,865	순증
일반공공행정	119,865	0	119,865	순증
입법및선거관리	119,865	0	119,865	순증

라. 추가경정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계	4,619,215	4,499,350	119,865	2.66%
물건비	1,989,883	1,898,683	91,200	4.80%
의회비	1,475,117	1,383,917	91,200	6.59%
의정활동비	342,000	250,800	91,200	36.36%
자본지출	139,037	110,372	28,665	25.97%
자산취득비	98,887	70,222	28,665	40.82%
자산및물품취득비	94,887	66,222	28,665	43.29%

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총 계	4,619,215	4,499,350	119,865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1,863,300	1,743,435	119,865
의회비	1,394,442	1,303,242	91,200
의정활동비	342,000	250,800	91,200
1)보조활동비	68,400	45,600	22,800
1)의정자료수집, 연구비	273,600	205,200	68,400
자산취득비	77,107	48,442	28,665
자산및물품취득비	73,107	44,442	28,665
1)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 의자 교체 구입(신규)	14,343	-	14,343
2)사무용의자(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79,000원*5개=		2,395
2)사무용의자(의원)	412,000원*29개=		11,948
1)사무용 전산장비 구매(신규직원 채용 등)(신규)	8,856	-	8,856
2)PC	1,236,000원*6대=		7,416
2)모니터	240,000원*6대=		1,440
1)집기비품 구매(신규직원 채용 등)(신규)	5,466	-	5,466
2)책상	209,000원*6개=		1,254
2)서랍	164,000원*6개=		984
2)의자	336,000원*6개=		2,016
2)파티션	202,000원*6개=		1,212

3. 검토결과

가. 예산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4억9,935만원에서 3.2%, 1억1,986만5천원이 증가한 46억1,921만5천원임.

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2024년도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은 전액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예산으로,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로 2,280만원(50%),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6,840만원(33.3%),
자산취득비 중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 의자 교체 1,434만3천원(순증),
신규직원 채용 등으로 사무용 전산장비 구입 885만6천원(순증),
집기비품 구입 546만6천원(순증),
총 1억1,98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4. 검토의견

-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이라 한다.)은 기정예산과 달리 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투자수요 발생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임.
- 2024회계연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 현실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2024.3.8.)한 ‘마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였고,

- 지난 202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원조례」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추가 채용(5명)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필요한 사무용 전산장비 및 집기비품 구입비를 반영한 것임.
- 의장단 등의 의자 구매비는 제9대 하반기 원 구성 예정에 따라 그동안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교체가 필요한 의장단 및 위원회실 의자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음.
- 의정활동비는 20년동안 동결되었던 지방의원 의정활동비의 현실화 차원에서 지급범위가 상향된 것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으로 구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써야 하겠음.
- 또한, 사무용 전산장비 및 집기 비품 구매는 그동안 구청과의 의견 차이로 추진하지 못했던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고
-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자 교체 비용은 하반기 원 구성에 따른 환경 정비 차원으로 이해되나, 각 물품의 상태 및 내용연수를 확인하고 물품의 기능 중심의 가치 평가를 통해 제품을 선정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하겠음.
- 추경편성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⁵⁾ 및 회계연도 독립의

5)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원칙에 따라 금회 편성한 예산들에 대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면밀히 재검토하여 충분히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고 상시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이 지연될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비효율 방지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